의안번호	2205697
의 뢰 인	김남근의원
회 답 일	2024.12.19.
추계번호	24D52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16항 (정의)	현행법상 “주요 원재료”를 “주요 재료비등”으로 변경하여 원재료 이외에 운송비, 「에너지법」 제2조[1]의 에너지를 추가하고, 주요 재료비등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16항 (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에너지법」 제2조(정의)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상세 사유

❑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에 운송비와 에너지 추가(안 제2조제16항)

○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2023. 10. 4.부터 시행하고 있음[2)]

○ 개정안은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에 운송비와 에너지를 추가하여 주요 원재료등의 가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3)]이 물품의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 등을 발주하는 경우 하도급거래에서의 에너지 비용 및 운송비용의 가격 변동이 연동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재정소요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 현 단계에서 에너지 비용 및 운송비용의 가격 변동(상승 또는 하락)이 발생한 거래의 수, 변동금액 등에 대한 예측을 합리적으로 하기 어려워 재정소요 증감에 대한 추계가 곤란함

---

2) 이 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